19세기 선비들의 글쓰기 방식 고찰①*

-<양제해 역모 사건>의 관변 기록

이형우**

-차 례-

1.서론
2. 윤광종 고변 내용
  2.1. 도당(徒黨) 면면
  2.2. 거병 실상
3. 김수기 공초
4. 이재수 공초
5. 그 이후
6. 결론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0634)
** 성결대학교 초빙교수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말 선비들의 글쓰기 양상에 대한 고찰이다. 그 첫 번 째로 <양제해 모변 사건>의 관변 기록을 다룬다. 양제해 사건은 아전들의 횡포에서 일어났다. 조선은 그들에게 녹봉(祿俸)을 주지 않았다. 아사 직전의 그들이 계를 만들어 주린 배를 채웠다. 후환을 없애려고 관백(官伯)까지 끌여들여 착취와 횡포를 합법화 했다. 결국 양제해 사건은 아전들의 간악함과 그들과 결탁한 목민관의 부패가 낳은 비극이다. 원인은 항산항심(恒産恒心)을 무시한 조정에 있었지만 책임은 백성들이 져야 했다.

<양제해 모변 사건>의 기록에는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무의식만 팽배해 있다. 장애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 불순분자로 간주하고 단죄했다. 집 안 단속만 하면 된다 여겼다. 그래서 19세기 조선 관료들의 글쓰기에는 격변하는 세계 인식이 없다.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라는 파고 앞에서도 그들은 고요했다. 청나라의 쇠락, 거기서 파생된 사회적 불안과 농민반란을 남의 일로만 여겼다. 여전한 사대주의, 경학 중심, 고문 추종의 글쓰기에 묻혀 있었다. 그래서 현실비판에서 나오는 실사구시가 있을 리 없다. 양제해 사건에 관한 기록은 그런 면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제어 : 양제해, 김수기, 이재수, 민란, 양제해 역모사건

1. 서론

양제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산 계기는 이강회의 『탐라직방설(耽羅職方說)』에 실린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에서다. 그 전까지는 모변 내지 모반(謀反), 홍경래란에 영향받은 민란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논문의 성격도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상찬계시말』과 무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관련된 겹쳐 읽기다. 앞은 김태능(1968)[1]과 권인혁(1988)[2]의 글이고, 뒤는 조성산(2007)[3], 정민(2007)[4], 박찬식(2008)[5], 김정기(2009)[6]의 글이다. 앞의 논문들은 왕조실록, 일성록 등에 나타난 기록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뒤는 관변기록과 「상찬계시말」을 견주면서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조성산은 다산학의 연장선에서 다루었고 정민은 관변 기록과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을 동시 조명한다. 박찬식, 김정기도 같은 흐름이다. 그 중에서도 시선의 방향과 넓이와 깊이는 각기 다르다. 정민은 포털 사이트나 백과사전의 기술까지 살피며 양제해의 죽음이 “제주 아전의 상찬계 조직의 치밀한 조작에 의한 억울한 희생”[7]이므로, 여태까지의 양제해 기록이 수정되기를 바란다.

반면 박찬식과 김정기는 양제해 사건의 실상을 알리는 데 더 역점을 둔다. 박찬식은 양제해 사건을 당대 제주 사회 이해를 위한 단서[8]로 바라본다. 김정기는 관변 기록의 <모변추핵일지>, <찰리사와 목사의 형량 비교>까지를 촘촘히 분석하고 정리했다. 여기에 「상찬계시말」의 기록까지 견주어 파노라마적, 입체적 재구성을 했다. 그러나 모든 연구는 2009년으로 마무리 된 듯하다. 이 글은 선행 연구의 행간 타기다. 이미 다 된 연구 위에, 관변 기록이라는 어휘 하나 얹는다.

---

1) 金泰能, 「양제해난과 제주민의 자주기획」, 『제주도』34, 1968.
2) 권인혁, 「19세기초 양제해의 모변 실상과 그 성격」, 『탐라문화』 7권,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소, 1968,
3) 조성산, 「이강회의 『탐라직방설』과 제주도」, 다산학 12호, 『다산학회』, 2008
4) 정민, 「상찬계시말」을 통해 본 양제해 모변사건의 진실, 『한국실학연구』15, 2008.
5) 박찬식, 「양제해 모변과 상찬계」, 『탐라문화』 33호, 탐라문화연구소, 2008.
6) 김정기, 「양제해와 제주 백성의 모변(1813) 다시 보기」, 탐라문화 34권, 2009.
7) 정민, 앞의 글, 296면.
8) 박찬식, 앞의 글, 192면.

2. 윤광종 고변 내용

양제해 모변 사건은 순조 13년 계유(1813) 12월 3일에 올라 온 김수기의 장계로 시작한다. 양제해의 음모를 폭로한 이는 윤광종이다. 윤광종은 양제해가 평소에 간힐(奸詰)하고 음특(陰慝)한 자이고, 항상 분수를 모르고 흉악한 짓을 하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다가, 서적(西賊)[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는 모반을 계기로 실행에 옮기려 한다고 했다.

> "(양제해가 말하기를) 요즘 들어 섬 백성들의 부역이 버거워서 맘편히 살 수가 없다. 장차 무리를 모으고 꾀를 합쳐 제주 영읍의 네 관원을 죽이고, 섬 전체를 내가 주재하려 한다. 제주의 배는 육지로 못 가게 하고, 육지의 배가 오면 재물을 빼앗고 배를 전복시켜 육지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후환이 없어지고 영구히 안락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겁주고 선동하였습니다. 김익강(金益剛), 고덕호(高德好), 강필방(姜必方) 등과 같이 속이고 모으고 겁주며 모으니 무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빈틈없이 계획하고[排布]하고 힘있는 자들[力士]을 모집하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달 16일 밤에 제주성에 쳐들어가 변란을 일으키고, 정의(旌義)와 대정(大靜)에서도 같은 날 거병(擧兵)하기로 하였습니다"[9]

장계를 요약하면 반란이고, 그 수괴는 양제해, 공범은 김익강, 고덕호, 강필방, 거사일은 12월 16일, 거사 장소는 제주성, 정의현성, 대정현성이다. 김수기는 양제해 및 그 도당 여럿을 즉시 추포하고 엄문하여 실정을 알아 보겠다고 한다.[10] 장계 날짜가 1813년 11월 7일이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보고서에 양제해의 탈옥과 재수감까지 같이 보고하고 있다. 양제해의 탈옥은 11월 9일에 일어났다. 12일에 봉개리 부창번의 집부근 대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13일 체포되어 재수감 된다.[11]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에는 10월 30일 늦밤부터 11월 1일 새벽 사이에 양제해를 체포했다고 나와 있다. 이 기록이 맞다면 일주일 시차가 발생한다.[12]

---

9) 『순조실록』, 순조 13년 계유(1813) 12월 3일(병신), 「濟州牧使金守基馳啓」
10) 『승정원일기』, 「狀啓以爲, 今十一月初七日, 本州中面健入里良人尹光宗進告內」
11) 「相贊契始末」에는 10월 그믐밤[새벽]에 이들을 불시에 체포해서 추핵했다고 나와 있다. 10월 30일 늦밤과 11월 새벽의 사건이다.
12) 김정기는 10월 30일 자시[밤 11시 – 1시]까지 심문 준비를 다 끝내 놓고, 죄인들을 마구잡이 족쳤다고 본다. 양제해도 혹독한 고문 끝에 투옥 되고, 옥리의 도움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잡혀와서 11일 오전 중으로 죽었다고 본다.[김정기, 앞의 논문, 172 – 176면 참조]

2.1. 도당(徒黨) 면면

김수기의 첫 장계[11월 7일]에 윤광종은 21명을 거론했다. 양제해도 21명을 실토했다.[13] 주모자로 의심받는 김익강은 7명을 대었다.[14] 이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거론 인물		
윤광종 진고장	양제해 진술	김익강 진술
강가 부자[대장장이]	강선귀[대장장이]	강필방
강성규[양제해 妾姪]	강성삼	고덕호
강성삼[양제해 첩남]	강성오[양제해 첩남]	고원창
강필방[양제해 妾叔]	강필방	양인복
고덕호[군교]	고덕종[고덕호 弟]	양제해 첩남형제
고상득	고덕호	전필록
고상인	고상득	
고천총[무관]	고성태[군기서원]	
고흥득	고원창[목리(木吏)]	
김기패	김광정[가리(假吏)]	
김익강[양제해 사돈]	김광집	
문언명	김순서[양제해 고종사촌]	
문언성	김신강[김익강 弟]	
문언장	김익강[주모자]	
문팽년[壯士]	김창서[양제해 고종사촌]	
문팽수[문팽년 弟]	문팽년	
백서방	양시언[鎭撫]	
백파총[무관]	양인복[양제해 8촌]	
양서방	윤광종	
양제해[수괴]	전필록[양제해 사돈]	
	함항태[旗牌,양제해 첩남]	

세 사람이 모두 거론한 인물은 강필방과 고덕호다. 윤광종과 양제해가 겹치는 인물은 강성삼, 고상득이고, 양제해와 김익강이 겹치는 인물은 고원창과 양인복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서로의 정보가 많이 다르다. 특히 진고인과 수괴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 내용이 판이하다. 또, 수괴와 주모자의 대질 심문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자체도 문제가 크다.

그런데 양일신은, 화약 철환 공급책 김광정, 검과 철편 제작 강선귀, 거병택일 양시언, 조총 궁시 보금 고성태, 군병 모집 김창서 형제, 군량 공급 고덕호, 강필방 아들, 고덕호 아들, 김익강 아들까지, 성사 후에는 세 고을 도원수로 김초관을 내정했다고 실토한다.[15] 스무살 남짓한 차

13) 『일성록』, 순조 13년 12월 3일, 「濟州牧使 金守基以謀變罪人梁濟海推覈馳啓」
14) 『일성록』, 순조 13년 12월 3일, 같은 기사.
15) 『일성록』, 순조 13년 12월 3일, 같은 기사.

남이, 수괴인 아비와 주모자인 김익강보다 더 소상히 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나중에 이재수가 '흉적의 자식들로서 마땅히 연좌(連坐)의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만, 양일신과 양일빈은 주도한 행적이 없으니 도배에 처해야 합니다.'[16]라고 한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심한 고문 끝에, 시킨 대로 외운 답변이 분명하다.

윤광종 거론인 거주지

거주지	지역	이름
건입리	중면	백서방
도두리		김광은
		문언명
		문팽년
		문팽수
무등리		고덕호
별도리		강선귀 부자
별라리		강성삼
		강필방
		강성규(子)
상무리		고천총 형제
		백광현
서촌	?	김익강

거주지	지역	이름
아라리	중면	양제해
하무리		양서방
		고상인
		고상득
		고흥득
		문언성
		문언장
제주	읍내	백가[백광현]
		양시언
		이애창
		윤광종
		오가
		김광정
		함항태
		고성태

윤광종이 제보한 사람들의 거주지는 중면이 대부분이고 읍내다. 제주는 제주를 중심으로 남북이 갈린다. 옛날엔 산세가 험해서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사(人事)도 혼사(婚事)도 이동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진다. 무슨 일이든 대연합은 불가하다. 그래서 제주 3개성 동시 거사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거론 인물 중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대정현의 김별감이다. 양제해 첩남 백인호가 서신을 전달하고 하룻밤 묵고 왔다는 사람이다. 나이가 44 – 45세 정도이고 구레나룻이 있다고 했다. 다음날 김별감이 양제해를 찾아 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걸 분명히 보았다고 했다. 그런데 취조해 보니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 사실을 힐책하자 '심한 고문으로 혼이 빠져서' 부르는 대로 대답했다고 했다.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는 거사 범위를 넓히려는 조작이다. 양제해 역모가 전 제주의 사건임을 드러내려 했다. 좌면 귀덕리의 김좌수 부자까지 포함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다.

16) 『일성록』, 순조 14년 갑술 윤2월 14일, 「濟州察理使李在秀以罪囚等分輕重酌處馳啓」

2.2. 거병 실상

윤광종 진고장에는 모집 인원 900명이라 적혀 있다. 이들을 셋으로 나눠 제주읍성, 정의현성, 대정현성을 공략하는데 300씩 배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양제해는 지금까지 '850 – 860명 쯤 모았다. 조총수가 30명이고 환도가 20여 개다. 10명이라도 모아달라고 한다.'[17] 여기에 윤광종은 "만약 병기(兵器)의 수가 적다면 각기 몽둥이와 큰 곤봉 1개씩을 들게 하십시오. 1인이 100명을 상대하기 충분할 겁니다. 어찌 병기가 적다고 걱정할 문제입니까?" 하고 대답한다. 양제해는 "윤 형의 말이 내뜻이요"하며 화답했다.[18]

정조 17年(1793)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濟州邑誌』에는 제주의 호구가 총 6,707가구, 인구는 총 40,111명이다. 그 중 남자가 17,130명 여자가 22,981명이다.[19] 관직은 목사 1명, 판관 1명, (중략) 현감 2명 등 , 좌수 각각 1명[20]이다. 『제주읍지』에 나타나는 당시 제주목의 병졸수는 모두 5,756명이다.[21] 그 중에서 목사나 판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급들이 군관(軍官), 가솔(假率), 기패(旗牌), 대기수(大旗手), 차비군(差備軍), 배행군(陪行軍), 인리(人吏), 공생(貢生), 진무(鎭撫), 사령(使令)으로 모두 2,711명이다. 대정현은 호구수 1733, 인구수 9,027[남 3,934/여5,092][22], 정의현은 호수구 2,336, 인구수 15,372명[남6,789/여8,592명][23]이다. 군사수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목사 판관 소속 보직

	軍官	假率	旗牌官	大旗手	差備軍	陪行軍	人吏	貢生	鎭撫	使令	계
목사 소속	72	90	92	597	259	71	140	50	90	210	1,671
판관 소속	11	34	27	62	325	295	166	30	0	90	1,040
계	83	124	119	659	584	366	306	80	90	300	2,711

17) 『일성록』, 순조 13년 1813년 12월 3일, 「濟州牧使 金守基以謀變罪人梁濟海推覈馳啓」
18) 『일성록』, 순조 13년 1813년 12월 3일, 「濟州牧使 金守基以謀變罪人梁濟海推覈馳啓」「狀啓以爲, 今十一月初七日, 本州中面健入里良人尹光宗進告內」, "若少兵器, 各持蒙同大杖一箇, 則足可一當百, 何患兵器之少也?" 濟海曰: "爾言正合吾意."
19) 戶口六千七百七 人口四萬一百十一內 男一萬七千一百三十 女二萬二千九百八十一(『濟州邑誌』 戶口)
20) 『濟州邑誌』「官職」, 牧使一員 判官一員 座首一 別監三 縣監二員 座首各一 別監各二 萬戶一員 監牧官一員 檢律一員 審藥一員 漢學一員 倭學一員 助防將八員
21) 『濟州邑誌』「軍額」
22) 『濟州邑誌』「大靜縣 軍額」
23) 『濟州邑誌』「旌義 戶口」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군사 분포표

	馬兵	束伍軍	城丁軍	差備軍	隨率官	旗牌官	人吏	使令	軍官	계
제주목 소속	816	3090	395	259	0	119	140	300	83	3,906
대정현 소속	264	240	379	40	126	2	86	40	73	504
정의현 소속	264	600	807	49	131	2	157	56	160	864
계	1,080	3,330	1,581	348	257	123	383	396	316	5,274

제주목 총 병사수

馬兵	牙兵	城丁軍	大旗手	陪行軍	差備軍	束伍軍	계
816	528	395	597	71	259	3090	5,756

특히 제주도는 잦은 왜침(倭侵)으로 방어구축 전략이 상시 작동한다. 그런데 양제해 일당은 900명으로 거사하고, 그것도 각각 300명씩 분산해서 세 성을 공략한다고 했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김통정처럼 삼별초 군사들의 무술 정도는 지녀야 한다. 그게 아니면 홍경래처럼 오랜 기간 준비하고, 여러 세력이 결집된 규모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거사 한 달 전[10월 16-17일쯤]까지도 모병이 덜 됐고, 무기가 턱없이 모자란다 했다.

3. 김수기 공초 내용

아래의 표는 1차 심문 목록이다. 김익강 고덕호 백인호 강필방은 두 번, 양제해는 네 번 문초를 받았다. 김익강은 초심 재심 심문 모두를 부인하는데 비해, 양제해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 장계의 행간 속에 보이는 양제해는 그때 이미 모든 정신줄을 놓고 있다. 오래 전부터 임금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네 관장을 척살하고, 제주를 자신의 섬으로 만들고, 육지와의 단절을 통해 꿈같은 세상을 만들려 했던 사람이 이미 아니다. 고문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더 부인해 봤자 부질없음을 알고, 자포자기한 대답이다. 앞의 양일신과 같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대질 심문 때마다 진술이 왔다갔다 한다. 주요 인물들의 공초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책/관계	심문	문목	공초
고덕호	군교	初審	모군(募軍), 거병(擧兵)	거사 동참 인정. 모병사실 부인
		再審	지명현고(指名現告)	대질 심문. 거절 표명
양인복	양제해 8촌	初審	동모(同謀), 거병(擧兵)	거병 동참 인정. 모병사실 부인
백인호	양제해 첩남	初審	대정현 모병(募兵)	대정현 동성리 김별감에게 서신 전달
		再審	김별감 허위 인물	심한 고문 탓
강선귀	대장장이	初審	동참(同參)	철편 2개 제작 의뢰.

강성삼	양제해 첩남	初審	동모(同謀)	회유 불응. 정의현 모병사실 부인
강성오	양제해 첩남	初審	동참(同參)	모의 사실 부인
강필방	양제해 妾叔	初審	거병(擧兵)	동참 인정
		再審	모병(募兵)	대질 심문. 그리 말한 사실 없음.
문팽년	壯士	初審	거병(擧兵)범성(犯城)	동참 인정
강성규	양제해 妾姪	初審	동모(同謀)	모의 사실 부정
강성옥 강옥성	양세해 妾姪 강필방 子	初審	도당 명단	금시초문
		再審	동참(同參)	부친[강필방]의 양제해 제안 거부 확인
고덕종	고덕호 弟	初審	형[고덕호]의 혐의	인정
문팽수	문팽년 弟	初審	형[문팽년]의 혐의	불확실
양제해	수괴	初審	반란 수괴(首魁)	모든 사실 인정
		再審	거병일 변경 이유	모집 군사 부족→ 계획만으로 그침.
		三審	탈옥 경위/잔당 실토	여당(餘黨) 실세 송익대
		四審	부가(夫哥) 2명 실명	고원창 지인
김익강	양제해 사돈	初審	분장양읍(分掌兩邑之說)	혐의 사실 부인
		再審	양제해 질타 진위	[양제해 일은] 흉모.
양일신	양제해 차남	初審	흉모전후 직고(直告)	거병 전후 인사 내역 실토

다음은 2차 심문 목록이다. 초심 심문 대상은 주요 도당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었다. 2차 심문은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다. 양제해와 김익강의 가문이 그 대상이다. 특히 고성태[군기서원], 고원창[목리], 김광정[가리], 김은보[기패], 부창번[목자], 송익대[전 만호], 양시언[진무], 이애창[목교], 함항태[기패] 등 전현직 관리들이 대거 잡혀 온다. 고성태, 고원창, 이애창 등은 대질 심문까지 요구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다. 나머지 사람들도 부인 일색이다. 그런데 양시언과 양정엽은 '다른 사람의 공초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왔으니 시인한다'는 묘한 답변을 한다. 그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말이다.

이름	직책/관계	심문	문목	공초
고성태	군기서원	初審	무기 공급	사냥 용도 부탁. 거래 차원 대응
		再審	무기 공급	대질 심문, 무고 질책
고원창	목리(木吏)	初審	모병 권유[首謀者]	모병 사실 부인
		再審	오십명모병설	대질심문. 부인
		三審	夫哥 성명	모름. 자신이 모집하지 않음.
김광은	기패(旗牌)	初審	도원수 내정설	양일신의 허언[양제해의 말]
김광정	가리(假吏)	初審	모인(募人) 작계(作契)	허무맹랑
		再審	혈당(血黨)	양제해의 공초[무기구입]는 허위
김순서	양제해 고종사촌	初審	동참(同參)	양제해 제의 거부
김신강	양제해 사돈	初審	동참(同參)	형의 말 외엔 들은 적 없음.

	김익강 동생			
김오걸	양제해 사돈 김익강 장남	初審	동참(同參)	풍질로 나는 게 없음
김오복	양제해 사돈 김익강 차남	初審	동참(同參)	풍질 환자. 금시초문
김오영	양제해 사돈 김익강 삼남	初審	동참(同參)	부친[김익강]이 양제해를 꾸짖었음
김창서	양제해 고종사촌	初審	서찰 전달	부인[손님 방문으로 대화 단절]
		再審	미친개 눈먼 말 해독	끝까지 마음 바꾸지 말라는 뜻
양시언	진무(鎭撫)	初審	동모(同謀), 거사택일	금시초문
		再審	거병택일(擧兵擇日)	백인호의 공초장에서 나왔으니 시인.
양일빈	양제해 삼남	初審	동모(同謀) 정황	어려서 아는 바 없음
양일회	양제해 장남	初審	동모(同謀),거병(擧兵)	부인, 부친 일은 말할 수 없음.
양정엽	양제해 숙부	初審	동참(同參)	문팽년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시인
양정위	양제해 숙부	初審	동참(同參)	부인
양정찬	양제해 숙부	初審	모역정황(謀逆情況)	금시초문
양정하	목교(牧校)	初審	근무 태만[탈출 방조]	사유 설명
오의규	양제해 처남	初審	동참(同參)	금시 초문
이애창	목교(牧校)	初審	모역(謀逆)	완강 부인
		再審	동모(同謀),거병(擧兵)	대질심문. 모병권유 사실 부인
전경록	양제해 매부	初審	동모(同謀)	거병 동참 응답
전필록	양제해 사돈 전경록 弟	初審	동모(同謀)	부인
함항태	기패(旗牌) 양제해 첩남	初審	동참(同參)	부인
		再審	동모(同謀)	부인

모병 규모는 모두 양제해의 말 속에서만 존재한다. 거사일 변경 이유를 “지난 해 5월에 구 영문(營門)이 교체되어 돌아갈 때를 타서 장차 군사를 일으켜 쳐서 취하려 하였으나 군사 모집이 숫자를 채우지 못한 까닭에 계획을 꾸민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24]라고 했다. 1813년 9월 5일에는 “한 섬을 뒤엎을 요량으로 용력 있는 사람이 70여명은 된다네.”[25]했고, 9월 15일에는 “고덕호를 시켜 군사 20명을 모집했고, 고원창은 군사 50명을, 강필방은 군사 2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저의 첩남 형제와 전필복, 양인복 등도 또한 군사를 모집했고요. 거사하기에 충분하니 사돈도 참여하시지요.[26]라 했으며, 10월쯤엔 “지금은 모집한 병사가 약 100여 명이 되네.”[27], 11월 4일에는 “지금은 모집한 병사가

24) 『일성록』, 순조 13년 1813년 12월 3일, 「濟州牧使 金守基以謀變罪人梁濟海推覈馳啓」, 「又狀啓以爲. 臣與判官張持大 · 大靜縣監白師健·旌義縣監權就一眼同推覈」 “果於前年五月, 乘其舊營門遞歸之時, 將欲擧兵攻取, 而因募軍之未充, 設計未遂.”

25) 『일성록』, 순조 13년 1813년 12월 3일, 「濟州牧使 金守基以謀變罪人文彭年推覈馳啓」, 문팽년 문목.

26) 『일성록』, 순조 13년 1813년 12월 3일, 「罪人儒生金益剛問目以爲」

27) 『일성록』, 순조 13년 12월 10일, 「罪人儒生金五榮問目以爲」

수를 채워 거사를 행할 때가 가까이 왔어”[28]라며 8촌 동생인 양인복에게 말한다. 고덕호도 11월 초순 사위 백광현에게 “군사 100명 모집 계획을 세웠다. 강필방(姜必方)은 중면(中面)과 좌면(左面)의 25명, 내가 25명 모집했고, 양제해는 중면과 우면(右面)의 50명을 모집했다”[29]고 한다.

그 다음은 양제해와의 대질심문 양상이다. 모두가 부인 일색이다. 고덕호는 “20인의 병사를 모집하였다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당초 양 풍헌이 10여 명을 모집해 달라고 했지만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이리 거짓말을 하십니까?”[30]라며 언쟁을 벌인다. 고덕호는 양제해와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짐작된다. 그런 그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고원창과도 대질심문에서 “터무니가 없습니다.”[31]고 한다. 강필방[첩숙부]도 “나는 애시당초 그런 말 한 적이 없네.”[32] 한다.

무기 관련해서는 양일회가 진술한다. ‘화약 철환 담당은 김광정, 검과 철편제조는 강선귀, 거병 택일은 양시언, 조총과 궁시 구입 고성태, 모병책 김창서 형제, 군량 보급 고덕호’[33]라고. 고천총도 강선귀에게 “자네는 기술자니 철편(鐵鞭) 2개를 만들어 주소.” 했다 한다. 또 “화약(火藥)은 별도리에 사는 김광집(金光集)의 집에서 사서 얻었고 철편도 급히 만들었네.”[34]라고. 10월 경에는 고덕호가 강선귀에게 말한다. “내가 양제해와 더불어 충분히 상의하여 곧장 영읍의 관장을 범하여(중략). 화약과 철환 구입을 위해 김광정을 뭍으로 내보냈으니, 오늘 내

---

28) 『일성록』, 순조 13년 1813년 12월 3일, 「濟州牧使 金守基以謀變罪人梁仁福問目以爲」“今則募兵充數, 事機迫頭”

29) 『일성록』, 순조 13년 12월 10일, 「濟州牧使 金守基以罪人白光賢等供招馳啓」“濟海何以爲牧使?” 德好曰: “募軍百名爲計, 而中左面二十五名, 姜必方募得, 二十五名我自募得. 中右面五十名, 濟海募得. 今十七日聚會于南門外, 乘夜突入, 要作大變.”云

30) 『일성록』, 순조 13년 12월 10일, 「罪人高元昌更推問目以爲」“元昌向濟海曰: “何如是誣言?” 濟海曰: “汝以募軍五十, 丁寧爲約矣.” 元昌曰: “汝當初使我募軍五十之說, 謂我矣. 今反以我募五十謂汝之說, 白地誣招”云

31) 『일성록』, 순조 13년 12월 10일, 「濟州牧使 金守基以謀變罪人梁濟海及干連諸人推覈馳啓」“何如是誣言?” 濟海曰: “汝以募軍五十, 丁寧爲約矣.” 元昌曰: “汝當初使我募軍五十之說, 謂我矣. 今反以我募五十謂汝之說, 白地誣招”

32) 『일성록』, 순조 13년 12월 10일, 「罪人姜必方更推問目以爲」“必方向濟海曰 : “使我募兵限二十名之說, 汝先發口. 故我則只聞而已.” 濟海曰 : “汝以募兵二十, 丁寧謂我而有此牢却耶.” 必方曰 : “我則初無是事云.”

33) 『일성록』, 순조 13년 12월 10일, 「罪人梁日新更推問目以爲」“火藥鐵丸備待者, 金光鼎也, 造劍造鞭者, 姜先貴也. 擧兵擇日者, 梁時彦也, 鳥銃弓矢等物欲爲得給者, 高成太也. 軍兵多少募得者, 金昌瑞兄弟也 軍糧當給者, 高德好也.”

34) 『일성록』, 순조 13년 1813년 12월 3일, 「罪人姜先貴問目以爲」, “高千總委訪渠曰: “汝是冶匠, 鐵鞭二箇造成爲計矣. 火藥亦爲貿得於別刀里金光集家, 鐵鞭急急造成”

일 사이에 반드시 들어올 거네."[35]

그러나 이들도 삼자 대면에서 관련성을 부인하고, 알리바이까지 성사시킨다. 모든 문목을 다 살펴도 말은 오갔다는데 실체가 없다. 평소에 도당들의 중심 거점은 첩남인 백파총과 함항태[36]의 집이다. 표의 1, 2차 취조 명단 중에서 26명이 모두 양제해 인맥이다.[37] 벼슬아치는 대부분 말단으로 11명이다.[38]

윤광종의 고변대로 치뤄진 심문 결과는 모두들 '들었다' '하더라' 일색이었다. 모반(謀反)의 정당성, 명분의 타당성에 긍지를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반역에 대한 거부감으로 충만해 있다. 순종인 백성들의 자기 변명, 자기 구명 외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김수기는 끝까지 역모죄의 사슬은 풀지를 않았다.

모반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모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모병(募兵), 무기 구입, 군사 훈련이 이뤄진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실증 가능한 답변이 나온 게 없다. 말로만 떠도는 모병 인원, 단 두 명에게 의존하는 무기 공급, 도당을 이끌 장수 하나 없고, 들고 나갈 총 한 자로 나오지 않았다. 시장바닥의 언사가, 형틀 앞에서 벌어진, 잔뜩 겁먹은 횡설수설만 난무한다. 조직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족칠수록 드러나는 것은 양제해 인맥이다.

---

35) 『일성록』, 순조 13년 1813년 12월 3일, 「濟州牧使 金守基以謀變罪人梁濟海推覈馳啓」) 「又狀啓以爲. 臣與判官張持大·大靜縣監白師健·旌義縣監權就一眼同推覈」 "十月間, 無等里高德好來言渠曰 : "吾與梁濟海, 爛熳相議, 直犯營邑官長, (중략) 渠問其募得諸人擧兵日子器械何物, 則答以火藥鐵丸貿來次, 使邑中金光鼎出陸, 今明間必也入來, 而以來月十五日二十日兩日擧兵爲計"

36) "이제 각처에서 모집한 사람이 [9월]8일 성안에 있는 함항태의 집에서 모이기로 약조하였네.(今則各處募人. 初八日約會於城內咸恒太家)"(『일성록』, 순조 13년 1813년 12월 3일, 「濟州牧使 金守基以謀變罪人梁濟海推覈馳啓」) 「又狀啓以爲. 臣與判官張持大·大靜縣監白師健·旌義縣監權就一眼同推覈」)

37) 숙부 양정엽, 양정위, 양정찬, 8촌 동생 양인복, 장남 양일회, 차남 양일신, 삼남, 양일빈, 매부 전경록, 그의 동생 전필록[사돈], 고종사촌 김창서, 김순서, 처남 오의규, 첩남 백인호, 함항태, 강성삼, 강성오, 妾叔 강필방, 妾姪 강성규[첩조카/강필방 子], 그의 동생 강성옥[강옥성], 첩사촌 목기수, 사돈 김익강, 그의 동생 김신강, 아들 김오걸, 김오복, 김오영

38) 가리(假吏) 김광정, 군교 고덕호, 군기서원 고성태, 기패 김광은 김은보, 牧校 양정하 이애창, 목리(木吏) 고원창, 부창번, 鎭撫 양시언, 前 萬戶 송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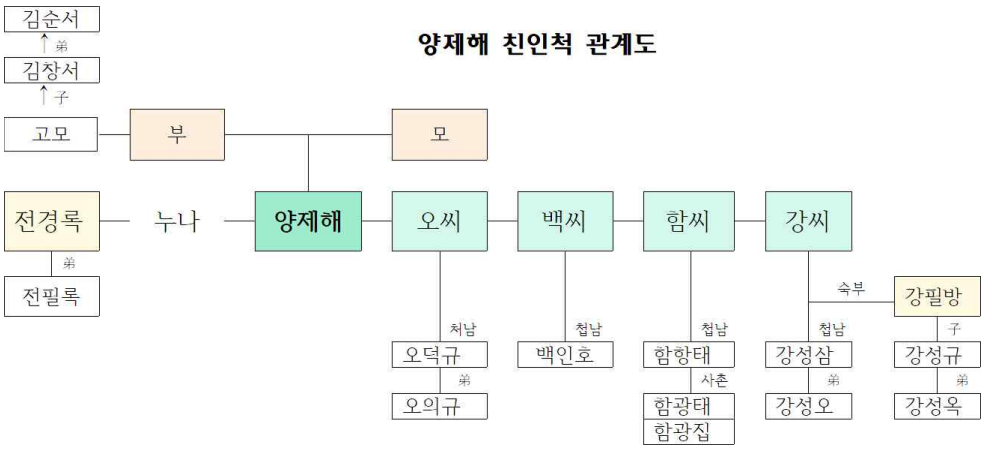

양제해 직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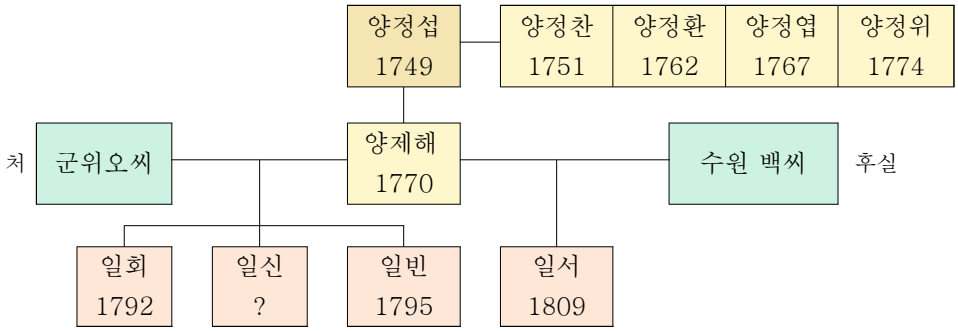

양제해 혼맥婚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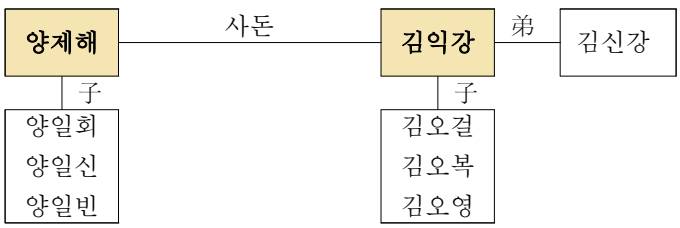

김수기가 파악한 최종 진상은 다음과 같다. 죄는 없어도 연좌죄를 적용할 사람들로 양제해 김익강의 직계를 들었다. 양제해의 숙부인 양정찬 양정위는 연로하고 지극히 어리석다. 그의 아들 일빈 역시 어리고 무지하다. 김익강의 아들인 김오복 김오걸은 풍질환자다. 그렇지만 연좌죄를 적용해야 한다. 선봉장으로 내정됐다던 문팽년은 함량 미달이다. 양정하 부창번은 탈옥을 도우고 숨겨주었으므로 유죄다. 김광정은 불고지죄다. 양제해의 첩남 백인호와 함항태는 어리고 무지하여 사건과 무관하다. 강필방의 아들인 강성규와 강성옥은 숙맥을 분별 못할 정

도로 어리석다. 고덕호의 아들 고사목도 마찬가지다. 이리 보면 도저히 역모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초지일관한다.

4. 이재수 공초 내용

찰리사는 당상관[정삼품 이상] 중에서 군무(軍務)를 보기 위해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다. 직급에 따라 도체찰사[정1품], 체찰사[종1품], 도순찰사[정2품], 순찰사[종2품], 찰리사[3품]라 불렀다.(『대전속록(大典續錄)』) 이재수는 정4품 응교였으나 한 계급 특진하여 제주 찰리사(濟州察理使)가 되었다.[39] 찰리사의 주 임무는 군사활동 감찰이다. 또 왕명의 지엄함을 백성에게 알리고 그들을 교화 위무하는 일이다. 관료제의 목적인 중앙집권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다. '찰리사'라는 직책에 이미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진상규명이고 둘째는 주모자는 합당한 징벌을 하고 셋째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이미 정해진 답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다.

이재수는 1813년 12월 16일[음] 창덕궁 수강재(壽康齋)에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한다.[40] 여기서 그는 '죄의 경중을 나누어 다른 섬으로 유배 보내고 싶다'고 하고 순조는 이를 허락한다.[41] 그러고는 이듬해 2월 13일 제주 화북진에 도착했음을 보고한다. 2월 6일 영암 고달도(古達島)에서 배로 출발했으나 소안도(所安島)에서 풍항이 심해 순풍을 기다렸다. 12일 밤 9시경[亥時]경에 출항하여 다음 날 오전 7시경[辰時]에 제주목(濟州牧) 화북진(禾北鎭)에 정박했다.[42] 하직 인사 후 57일이 걸렸다. 늑장 도착이 오히려 그의 업무를 가볍게 했다. 수괴로 지목된 양제해 및 주모자급들이 옥사한 탓이었다. 그래서 원만한 수습만이 그의 몫이었다.

한 달 뒤의 장계에는 '목사 김수기(金守基)를 장파(狀罷)'한 일[43], '경중을 나누어 죄수들을 처리한 일'[44]을 보고한다. 2월 13일 도착하

39) 『일성록』, 순조 13년 계유(1813) 12월 5일(무술)
40) 『일성록』 순조 13년 계유(1813) 12월 16일(기유) "召見察理使 李在秀 黃海水使 尹郁烈于壽康齋"
41) 『일성록』, 순조 13년 계유(1813) 12월 16일(기유) "命濟州罪囚等分輕重發配他島"
42) 『일성록』, 순조 14년 갑술(1814) 2월 28일(경신), 「察理使李在秀以渡海馳啓」
43) 『일성록』, 순조 14년 갑술(1814) 윤2월 14일(병자), 「濟州察理使李在秀狀罷牧使金守基」
44) 『일성록』, 순조 14년 갑술(1814) 윤2월 14일(병자), 「濟州 察理使 李在秀以罪囚等分輕重酌處馳啓」

여 올린 장계가 2월 28일에 조정에 닿았으니 보름이 걸렸다. 그렇다면 윤2월 14일에 도착한 장계는 1월 말이나 윤2월 초에 작성한 걸로 짐작할 수 있다. 보름 남짓 동안 조사한 보고서다. '2년 동안 치적이, 한쪽 말만 들어서 간악함이 생겨나고 아랫사람의 의견을 막아 폐단이 생겼으며', 이번 사건도 '여러 죄수를 심문할 때 별도의 장(杖)을 만들어 써서 죄수 7명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원악(元惡) 양제해(梁濟海)'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고, 나머지 죄인들도 '엄히 형문 받아' 죽어서 일을 그르치게 됐다는 명분이다.

'경중을 나누어' 처리한 장계에는 사건 개요와 처벌 상황을 보고한다. ①제주도 품관(品官) 양제해가 ②동지 4, 5인과 결탁하여 ③3개 읍의 수령을 모두 모해(謀害)하고 ④배를 전복시켜 재물을 탈취하고 육지와의 통로를 끊으려 했으며, 그를 위해 ⑤어리석은 백성들을 꾀어내서 무리를 모으고, ⑥여럿이 모여 등소(等訴)한다고 핑계 대거나 ⑦계(稧)를 만들어 서로 도울 것이라 했고, ⑧대부분이 등소하거나 계 만드는 걸 좋아게 여긴 무지한 자들이나 ⑨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이름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거 붙잡혀와 ⑩잘못된 공초를 받았다고 했다. ⑪그 중에서 경중을 헤아려 사형(死刑), 도배(島配), 석방으로 구분하고 ⑫진고인 윤광종이 확실한 증거로 고하였으니 포상과 은전이 있어야 한다며 ⑬윤허를 기다린다고 했다.

2월 19일, ⑭비변사에서 이를 접수하고 공평 타당하다며 ⑮찰리사 요구대로 허락하심이 좋겠다고 아뢰고 윤허가 내린다.[45] ⑯3월 5일에 어명이 도착하고 ⑰다음날[3월 6일] 아침[묘시(卯時)]에 고덕호와 양일회(梁日會)를 효수하여 ⑱3개 고을의 백성을 모아 모두 대중을 경계하는 기회로 삼는다. 나머지는 ⑲절도(絶島) 무기한 정배 4명, 도배(島配) 6명, 보방(保放) 10명, 무죄석방 25명, ⑳윤광종은 제주의 변장(邊將)자리가 나면 주라고 제주목에 통보한다. 이로써 양제해 모변 사건은 끝이 난다.

먼저, 이재수는 양제해 사건을 김수기의 시선 그대로, 심지어는 그보다 더 심하게 기울어서 보고 있다. 첫째 ① - ④항까지는 김수기의 보고서 내용 그대로다. 둘째 ⑤ - ⑦항은 김수기의 보고서를 더욱 심화시켰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감언 이설로 어르고 위협하여 선동해서(誘說恐脅, 煽動愚氓)'라는 말을 '등소(等訴)'와 '작계(作契)'로 바꾸어 사람을 모으는 구체적 명분과 결속 방편이라 밝히고 있다. 분명, 김수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에 다가선 감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휘들을 '사

45) 『일성록』 순조 14년 갑술(1814) 윤2월 19일(신사), 「命濟州罪人高德好梁日會等梟首 警衆次律以下依查啓施行 發告人尹光宗本島邊將除授」

리에 어긋나는 말'[46]로 단정한 점이다.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의 논조대로라면 양제해 모변사건은 '등소(等訴)'가 직접 원인이다. 이것을 패설(悖說)로 호도하는 일은 변란 내지는 모반이라는 선입견이 깔려 있어서다. 이러한 흑백논리 오류는 여러 심문에 자연스레 적용된다.

이재수는 김수기의 취조를 바탕으로 심문한다. 이재수도 김수기와 마찬가지로 역모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강선귀(姜先貴), 강필방(姜必方) 등과 대질심문시켰다. 갑론을박하다가 나중에 자복했다고 적었다. 김수기가 3차례 엄신(嚴訊)했어도 못 밝혔던 일을 대질로 드러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

이재수는 이들이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함구한다고 확신한다.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더욱 크게 의심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논리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말이 왜 있느냐는 거다. 그래서 삼읍분장설(三邑分掌說)은 '없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단정한다. 이런 논리적 오류로 다른 진술까지 판명한다. 거병일도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고.[47] 그래서 고덕호를 사형 언도했다. 대질심문까지 요청하며, 자신은 양제해의 심복이 아니고, 모병한 사실이 없다는 말은 무시해 버렸다.

양일회도 마찬가지다. 9촌 아재인 양인복과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면서 '사전 모반한 사실이 중요하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선후가 어떤지는 상관없다' 한다.[48] 김익강도 그렇다. 애초부터 변란을 도모한 일에 동조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여긴다. 그래서 취조를 통해 관가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실토[49]하게 한다.

강필방도 마찬가지다. 양제해가 도민을 위해 거사한다는 말을 듣고,

---

46) 『일성록』 순조 14년 갑술 윤2월 14일, 「濟州察理使李在秀以罪囚等分輕重酌處馳啓等訴或稱作稧而相助發其悖說」

47) 『일성록』 순조 14년 갑술 윤2월 14일, 「濟州察理使李在秀以罪囚等分輕重酌處馳啓」, "高德好則當其盤問之時 頃刻變辭二三其說 爲齊每煽動邑里閃忽東西之 擧多出於各人等招而 終未得一一覈實以其 與姜先貴姜必方等面質招觀之 或稱其初不相見或稱其初無酬酢 竟爲自服 其相見則 其所殺吏 犯官之說 雖欲終始之秘諱 不可以謂無其說 且其語屈於兩造則其所 三邑分掌之說 雖諉彼口之先 發亦不可以謂無其事 此猶屬之於眞僞未分之科而 擇定某日擧兵攻城之約及旣入凶謀之說 前旣納招於本牧 今又首實於更查而 只以擇日一款謂之曾所不知渠輩 擇日必無不知之理而擧兵攻城之招已 極凶悖則擇日之 知不知實不暇論"

48) 『일성록』 순조 14년 갑술 윤2월 14일, 「濟州察理使李在秀以罪囚等分輕重酌處馳啓」, "綢繆爲謀不在發言之先後"

49) 『일성록』, 순조 14년 갑술 윤2월 14일, 「濟州察理使李在秀以罪囚等分輕重酌處馳啓」 "去十一月初三日 得聞擇日牢定之報 始認其眞有謀變之心云者必出於掩諱其自初 同謀之意而其所知情無辭自明以不卽進告 萬死無惜已爲納侅"

“도민이 먹고 사는 일은 모두 육지에 기대고 있는데 망령된 거사를 일으키면 도리어 죽게 된다. 그럴듯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치밀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양재해의 성품이 그러지 못하니 어찌 거사를 하겠나?”[50]라 했다. 그런데 이재수는 그 말을 ‘의리가 아니라 잇속에서 나왔다’며 몰아간다. 강필방의 말은 양제해에 대한 비하다. ‘그 정도가 무슨 그런 일을!’이라는 폄하다. 그런데 이재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모변(某邊)의 다른 말이고, ‘모변’을 감추려고 ‘성품’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끌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진실로 양제해와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본다.

양인복도 삼읍분장설(三邑分掌說)의 당사자로, 구설수에 올랐다는 자체로 단죄 받는다. 이미 그런 말 나오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양일회와 선후를 다투는 말은 서로 수작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한다.[51] 김창서도 서신 전달에 대해 공모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難免同謀之目]고 판정한다. 이애창도 양제해의 말에 거역하지 않았으니 사형감이라 한다. 이애창의 자백이 지독한 고문에 의해 그리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바뀌지 않는다. 김수기는 순진한 면이라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이재수는 결코 진실 규명을 중시하지 않았다. 그는 찰리사 임무를 부여받기 전에 황해도 암행어사 임무를 마치고 왔다. 암행어사, 찰리사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늘 그런 결론, 엄벌 대상을 골라야 했다. 그래서 양제해의 심복 같은 고덕호와 양제해의 장남인 양일회를 택했을 뿐이다. 이미 그에게 정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였고, 그것도 임금의 특사였다. 그가 중시한 것은 국가적 위엄, 왕의 은덕, 백성들의 호응이었지 양제해 일당들의 신원은 아니었다. 조정에서는 양제해 사건을 민란 조짐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발빠른 대응을 했다.

사망 7명, 정배 10명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양시언, 고성태, 고덕호, 고원창을 제외하면 모두가 양제해 집안 사람들이다. 어떤 조직도 규모도 물증도 찾아내지 못하고서도 진고인의 말대로 처리했다. 그것

---

50) 『일성록』, 순조 14년 갑술 윤2월 14일, 「濟州察理使李在秀以罪囚等分輕重酌處馳啓」 “島民衣食皆藉陸地作 此妄擧反致盡劉此雖近於禁止之辭而 不據義理只較利害則 其心所在與濟海不甚相遠 且以此等重事若不堅密做去不如已之之說向於濟海者竟出於姜成三之招而 及其與成三面質 謂以氣稟不甚堅密何爲此擧 爲說欲避其謀變之謂重事 强引其氣稟而爲變辭誠如其言 實是相許而再度盤問之際”

51) 『일성록』, 순조 14년 갑술 윤2월 14일, 「濟州察理使李在秀以罪囚等分輕重酌處馳啓」, “與日會面質以其發言之先後欲爭 彼此之優劣其所先後 不必深究迭相酬酢 自可推知知情之目已 無可言同謀之擧亦所難免”

은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조정의 예방책이었다. 일벌백계(一罰百戒), 벽사진경(辟邪進慶)하려는 발상이었다.

양제해 모반사건 시말 김수기 이재수 장계 요약

	김수기	이재수
수괴	양제해	양제해
주모자	김익강	고덕호[거병/공성], 양일회[공성]
군사모집	김창서, 강필방, 양인복	
군량공급	고덕호	
거병택일	양시언	
후봉장	전필록, 양정엽, 양일회, 양일신	
적극가담	문팽년, 고덕종, 김순서, 전경록, 강성삼, 김신강, 김오영, 이애창, 강선귀, 고성태	김익강[공모] 강필방[공모] 김창서[공모] 양인복[사후중책] 강성삼,[불고지] 강성규[불고지], 고원창[불고지], 이애창[불고지]
연좌	양정찬, 양정위, 양일빈 김오복, 김오걸	양일신, 양일빈
탈옥방임	양정하, 부창번	
불고지죄	김광정	
무고죄		홍종엽
포상	윤광종	윤광종

김수기 ·이재수 문목 및 최종 판결

	직위/관계	김수기	이재수	판결[형량]
고덕호	군교	모군(募軍), 거병(擧兵)	거병(擧兵), 공성(攻城)	사형
양일회	양제해 장남	동모(同謀), 거병(擧兵)	공성(攻城)	사형
김익강	양제해 사돈	동신이형(同身異形)	自初知情 不辭	흑산도(黑山島) 정배
강필방	양제해 妾叔	거병(擧兵) 모병(募兵)	불고지	흑산도(黑山島) 정배
양인복	양제해 8촌	동모(同謀), 거병(擧兵)	삼읍분장(三邑分掌)	금갑도(金甲島) 정배
김창서	양제해고종	서찰전달	서찰전달	금갑도(金甲島) 정배
강성삼	양제해 첩남	동모(同謀)	불고지죄(不告知罪)	추자도(楸子島) 정배
강성규	양제해 妾姪	동모(同謀)	불고지죄(不告知罪)	추자도(楸子島) 정배
이애창	목교(牧校)	동모(同謀), 거병(擧兵)	불고지죄(不告知罪)	신지도(薪智島) 정배
양일신	양제해 차남	흉모전후 직고(直告)	무죄지만 연좌죄	신지도(薪智島) 정배
양일빈	양제해 삼남	동모(同謀) 정황	무죄지만 연좌죄	고금도(古今島) 정배
고원창	목리(木吏)	모병(募兵)	불고지죄(不告知罪)	고금도(古今島) 정배

5. 그 이후

‘양제해 묘’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무덤은 아라동 그의 고향 언덕에 있었다. 술 한 잔 올리고 절을 했다. 제주 특유

의 무덤이었다. 감은사지(感恩寺址)처럼 용이 다니는 길[神路]이 있었다. 기울어진 비석에는 다음 글귀가 새겨져 있다.

留鄕別監梁公濟海之墓

梁公의 本은 濟州이시고 諱는 濟海이시니 耽羅의 開國始祖 良乙那王의 後裔로 改良爲梁하신 廣巡使諱 宕의 裔孫이며 星主公諱는 具美에 二十五代孫이며 司直公諱는 有琛에 四十代孫이시다 曾祖諱는 進禹留鄕座首祖諱는 起岑留鄕別監考諱는 廷燮留鄕妣는 羅州金氏 鄕貢進士萬謙女이시고 公은 英祖庚寅生이오 留鄕別監 純祖癸酉 十一月十六日卒이며 配는 軍威吳氏光斌女이니 英祖戊子生이오 純祖癸酉十一月二日卒이니 有三男日會日信日彬이오 墓는 我羅里北邊東九呼林丁坐原이며 繼配는 水原白氏八月二十九日卒이며 有一男日瑞이오 墓는 我羅里鐘聲旨北丁坐原이오 長孫重玉詩文德行善事父母之孝行旣見於三剛錄으로 知名於世라 次孫重賢重烈重花이오 曾孫成松成弘別監成行訓長成準訓長和鎭이오 玄孫은 在林在鐸在俸在錫 德奎德仁德義德性德均 高等考試司法科合格判事德鼎在寬이오 五代孫達浩炆鍾舜鍾字鐘秀全達春貞植吉祚京守南洙昌賢昌秀昌植伯坤三陽五星達現達寅達祚達程이오六代孫圭鎣哲河哲秀哲勳哲弘哲珉龍昌承範承俊永玉永喆正浩該雄宰榮承煥承喆哲鎬哲善哲河哲秀哲南善熙善鎬로餘不記라

墓는 我羅里一五二六番地上巳坐原

西紀一九九一年辛未八月一日

五代孫 宇種 謹誌

後孫 一同 謹竪

비석의 내용은 양제해 선조들과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가 전부였다. 그 중에서 『삼강록(三剛錄)』에 이름 올라 있는 장손 중옥(重玉), 사법고시 합격한 판사 현손 덕정(德鼎)이 우뚝했다. 끈질기게 살아 남은 후손들의 생존기였다. 역모로 죽은 사람의 무덤이 버젓이 있다니. 그것도 고향 마을에. 이해 안 되는 지점이 많았다. 비석을 세운 해는 1991년이었다. 양제해 모변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된 시점이 아니었나 싶다.

양제해 묘소

5대손 양우종 선생을 찾아뵈었다. 92세인데도 정정하셨다. 조심스러웠지만 지닌 자부심이 커 보였다. 족보에는 군위 오씨와 수원 백씨가 올라 와 있었다. 함씨와 강씨 할머니 두 분이 더 계신다고 알려 드렸다.

"첩을 많이 거느리셨으면 재산도 좀 있었겠습니다?" "제 자 해 자 할아버지는 아라동 경계 지역에 질 좋은 땅이 좀 있었고, 거기서 기와를 구우셨다고 합니다. 넓은 땅에 농사지으니 밤에 도둑들이 들어와서 활을 쏘아 쫓으셨다 합니다. 솜씨가 좋아서 한 발에 두세 명의 다리를 맞추셨다네요."[52]

양우종 선생

1814년 3월 6일 아침, 양일회[1792-1814]는 효수되어 저자거리에 목이 걸렸다. 차남 일신은 신지도(薪智島)로, 삼남 일빈은 고금도(古今島)로 유배되었다. 언제 유배가 풀렸는지 모르지만, 일신은 귀향했고 일빈[1795 - ?]은 거기서 정착했다. 그래서 묘지가 목포시 삼정동 석현리 20번지에 있다. 수원백씨 소생 일서[1809-1869]는 어찌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시 다섯 살 배기였던 막내 아들과 그 어머니의 고초는 짐작만 할 뿐이다. 일서의 후손들도 여전히 제주에 산다.

양일회의 아내는 김해김씨로 김익강의 딸이다. 1살에 애비 잃은 자식을 잘 키워 『삼강록』에 올렸다. 그 아들 중옥의 현손이 양우종 선생이다. 판사 덕정은 일빈의 증손이다. 변호사로 지내다 6·25를 만났고, 북괴군에게 끌려가 총살 당했다는데 장소를 모른다. 자식들은 흩어져 서울, 용인 인천 등에서 산다고 했다.

아버지[양제해] 옥사하고, 아들[일회] 참수 당하고, 차남, 삼남 유배가고, 막내 아들이 5살이었던 집안. 있던 재산 다 몰수 당하고 풍비박산난 가문에 무덤이란 언감생심이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양제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증케 해 준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근에 윤광종의 무덤이 있었다 했다. 규모도 많이 컸다고 했다. 윤광종은 명월만호로 임명 받았지만 낙마하여 죽었다고 전해진다. 벼슬아치로 죽었기에 예를 갖춘 것 같다 했다. 무덤은 찾을 수 없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없어진 것 같다 하셨다. 많은 글감을 기대하고 갔었다. 그러나 어떤 문서 조각 하나 있질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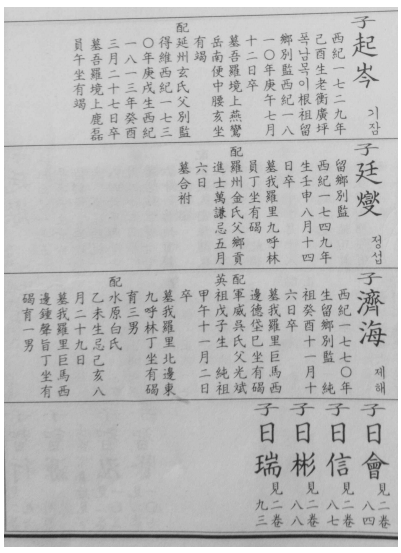

52)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의 가난과는 거리가 있다.

6. 결론

19세기는 세계사적으로 격변의 시대였다. 산업혁명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여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나아가 제국주의가 팽창하여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렸다. 청나라는 쇠퇴했고, 불안한 사회 상황으로 민란은 끊이지 않았다. 조선에서도 홍경래난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조선 조정과 관료들은 말 그대로 태평천국이었다.

양제해 사건은 상찬계에서 유래하고, 상찬계의 횡포는 배고픔에서 생겨났다. 조선의 국가 제도는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향리, 아전에게 녹봉을 주지 않는 관습이 이들의 타락을 가속화 했고, 그것이 결국 관료제 생태계 전체를 오염시켰다. 계를 결성하여 이속을 챙겼고 그것이 착취로 변했다. 저들만 먹자니 후환이 두려웠다. 그래서 부임 사또를 끌어들였다. 죽어나는 건 백성들이었다.

이재수도 양제해 사건의 본말을 분명히 알았다. “제주의 관인들이 붕당(朋黨)을 결성하고, 계(契)를 만들어 서로 돕고, 여러 직책도 계군들끼리 나누었”고 이번 “양제해(梁濟海)의 변고가 그 축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좌수(座首)나 천총(千摠)이 될 수 없기에 발생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앞으로 부임하는 수령들이 사사로움을 물리친다면 계는 저절로 혁파될 것이라 했다.[53] 그러면서도 끝까지 반란 모의라는 선입견을 바꾸지 않았다. 잠적한 상찬계원 대신 양제해 일파를 엄벌하여 상찬계를 제압했다. 그는 진실 규명보다, 유사 사건 방지가 더 시급했다. 그래서 주모자를 엄벌했고 백성들을 위무했다. 채찍과 당근으로 백성들을 무마시켰다. 그 후속 조치로 제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상찬계시말(相贊契始末)」에는 이재수를 천선(天仙)이라 적고 있다. 하지만 당대의 세계사적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그의 키가 작은지 알 수 있다. 그는 임금의 충복이었고 특임 관리였다. 임금의 편에서 국가 기강을 바루는 일에 충실했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여 승승장구했다. 반대로 양제해 일가는 멸족지화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근본도 모른 채 사는 데만 급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통찰력 없는 관료적 글쓰기는 양제해 제작에 주저하지 않는다. 법치

53) 『일성록』, 순조 14년 1814년 05월 28일 (음), “司啓曰, 卽見濟州察理使李在秀別單, 則其一, 本州官人輩互樹朋黨, 相贊作契, 凡諸任名, 皆出於此, 故今番濟海之變, 實出於契外人不得爲座首·千摠故也, 若使爲官長者, 斥私惟公, 則契自革罷, 本島長吏另加擇差事也, 募衆作契, 本有邦禁, 而況此黨同排異, 打成一圈, 以爲島民謀亂之本, 尤極驚惋, 今後則鋤黨祛奸, 差任必公之意, 嚴飭本牧”

(法治)가 법술(法術)이 되면, 그 기술자들은 진위(眞僞)와 정사(正邪), 본말(本末)과 선후(先後)를 뒤바꿔 버린다. 권력과 결탁하고 매스컴을 부리면서 당당하게 칼자루를 휘두른다. 익숙한 우리 근현대사의 단면이다. 관료적 글쓰기로 본 양제해 사건은, 어제가 오늘인 우리의 현실을 더욱 고민하게 만든다. 21세기에도 어떻게든 살아 남는 게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양제해 심문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Writing Styles of 19th-Century Scholars

Lee, Hyeongwoo(Sungkyul University)

This essay examines the writing patterns of scholar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t first addresses the official records related to the “Yang Je-hae treason case.” The Yang Je-hae Incident arose from the tyranny of the local clerks (ajeon). The Joseon government did not provide them with official salaries, leaving them on the brink of starvation. To stave off hunger, they formed associations to secure food, and to eliminate future risks, they even brought in high-ranking officials to legitimize their exploitation and tyranny. Ultimately, the Yang Je-hae Incident was a tragedy born of the cunning of these clerks and the corruption of the local governors who colluded with them. While the root cause lay in the government’s disregard for the principle of “constant livelihood, constant mind” (hangsan hangsim), the blame was shifted onto the courageous common people.

The records of the “Yang Je-hae treason case” are filled with an unconscious desire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existing system. Anyone who posed a threat to this was considered a dissenter and was stripped of their life. The authorities believed that all they needed to do was manage internal affairs. Consequently, the writings of 19th-century Joseon officials show no awareness of the rapidly changing world. Even in the fac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waves of imperialism, they remained indifferent. They viewed the decline of the Qing Dynasty, and the resulting social unrest and peasant revolts, as someone else’s problem. Their writings were still steeped in Sinocentrism, focused on Confucian studies, and followed classical texts. As a result, there was no practical approach or realistic perspective emerging from a critique of reality. The

records concerning the Yang Je-hae Incident clearly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Key worlds : Yang Je-hae, Kim Soo-ki, Lee Jae-soo, Min-ran, Yang Je-hae reverse murder case

[참고문헌]

「상찬계시말」(이강회, 『탐라직방설』)
『순조실록』
『일성록』
『비변사일기』
『승정원일기』
『탐라기년』

권인혁, 「19세기초 양제해의 모변 실상과 그 성격」, 『탐라문화』7,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소, 1968, 127-151면.
김태년, 「양재헤나노가 제주민의 자주기획」, 『제주도』34, 1968.
조성산, 「이강회의 『탐라직방설』과 제주도」, 다산학 1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49-80면.
정민, 「상찬계시말」을 통해 본 양제해 모변사건의 진실, 『한국실학연구』15, 2008, 263 - 302면.
박찬식, 「양제해 모변과 상찬계」, 『탐라문화』 33호, 탐라문화연구소, 2008, 167-197면.
김정기, 「양제해와 제주 백성의 모변(1813) 다시 보기」, 『탐라문화』 34권, 2009, 127-151면.

투고일: 2024.07.08 심사일: 2024.08.10 게재확정일: 2024.08.15